

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창군의회	질문위원	이 주 응 위 원	
답 변 자	평창군수(보건사업과장)	일자	질의	2018.10.25
			답변	2018.10.26
회 의	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			

질문요지

○ 보건의료원 신축 관련 문화재조사 현황

답변내용

○ 문화재조사 법적 근거

- 조사근거 :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, 11조
- 조사사유 : 사업예정부지가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(문화재법)으로 문화재지표조사필요

○ 문화재조사 용역 현황

1회: 시굴조사(477㎡)

- 조사기간 : 2016. 12. 1 ~ 12. 30
- 위치 및 대상면적 : 평창읍 하리 77-1 외 7필지, 4,777㎡
- 용역내용 : 건축예정부지 10%(477㎡)에 대한 시굴조사
- 용역비 : 19,756천원
- 용역결과 : 조선시대 건물지의 적심 및 석렬유구 존재
⇒ 대상지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(670㎡)

2회: 정밀조사(670㎡)

- 조사기간 : 2017. 7. 11 ~ 8. 29
- 위치 및 대상면적 : 평창읍 하리 77-1 외 3필지, 670㎡
- 용역내용 : 시굴조사결과에 따른 670㎡에 대한 정밀조사
- 용역비 : 114,735천원
- 용역결과 : 고려시대 건물지 및 적심, 탑지로 확인됨
⇒ 조사자료 정리 후 건축 가능

3회: 시굴조사(170㎡)

- 조사기간 : 2018. 4. 2 ~ 4. 21.
- 위치 및 대상면적 : 평창읍 하리 231 외 3필지, 1,721㎡
- 용역내용 : 주차장조성부지 10%(170㎡)에 대한 시굴조사
- 용역비 : 16,500천원
- 용역결과 : 특별한 유구 존재 없음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가능

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(약칭: 매장문화재법)

[시행 2018. 6. 13] [법률 제15172호, 2017. 12. 12, 일부개정]

문화재청(발굴제도과) 042-481-4941

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

- 제6조(매장문화재 지표조사)**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·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(이하 "지표조사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-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

- 제11조(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)**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.
1.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
 2. 유적(遺蹟)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
 3. 토목공사,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
 4. 멸실·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,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,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